

“유흥업소 한밤영업제한조치 직업선택 자유·평등권 침해”

유흥업회 회원 헌법소원

일반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한 심야영업 금지조치는 헌법에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원 강재인(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21일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제30조 ‘영업시간’과 서울시 영업시간제한 고시(89년 12월)에 대해 “헌법 제15조와 11조1항이 보장하

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각각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강씨는 청구서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심야시간대에도 업무상 또는 사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커진 생활양식의 변화를 도외시킨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94. 6. 22

하성봉 기자